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69

발의연월일: 2023. 1. 9.

발 의 자:소병훈·김두관·김민철

김병주 • 김정호 • 민형배

박 정・안호영・윤재갑

이개호 · 인재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관리·육성·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한계가 있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하여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

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의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등록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에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의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라.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정 및 말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 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전부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제2항 신설).
- 사. 등록하려는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의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경우
 -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하면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1.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한 경우(「농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제외한다)
- 2. 농지 · 축사 · 임야 ·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우

- 제31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4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정보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 등록을 포함 한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 제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④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선고받은 자부터적용한다.

제3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정보가 말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어업경영정보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
	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u>할 수</u>	<u>하거나 해</u>
<u>있다</u> . <u><후단 신설></u>	당 농어업경영체에게 관련 증
	<u>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u>
	<u>다</u> .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저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u> 니하게 된 경우

<u>인</u> 관	관리를 위	비하여	농어	업경영
체의	생산수	단, 성	생산농·	수산물
및 성	생산방법	등의	농어	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학	할 수 있	<u>다.</u>		

116조의2	2(등	록정녌	브의	정정	또:	는
말소)	1					

- 1. (현행과 같음)
- 2. <u>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u>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오
 - <u>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u> <u>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u> <u>경우</u>
 -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

3. (생 략)<신 설>

<u>4. · 5.</u> (생 략)

②·③ (생략) <신 설> 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농지처분명령(같
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
나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은 경
우

- 3. (현행과 같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을하지 아니한 경우
-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농 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4 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1.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

 한 경우(「농지법」 제9조 및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자
 - 2. · 3. (생략)
 - ②·③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제외로 한다.)
2.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
<u> </u>
제31조의2(벌칙) <u>①</u>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1. 제4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농
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 1. 제4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농 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